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4.17. 시행)에 따라 삭제 지원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와 설치·운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등에서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로 확대, 상담기록 보관기간 명시(안 제2조의6 개정)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2조의7 신설)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2조의8 신설)

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9 신설)

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10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 제목 중 “불법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로 한다.

제2조의6 중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한다.

제2조의6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촬영물등”)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등 및 신상정보”(“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로 한다.

제2조의6제4항제1호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상담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편집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는 “편집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및 상담기록”으로 한다.

제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7(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 서비스 관련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2.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8(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3항제4
호에서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2.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 통계 작성 관리
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9(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의 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관
으로 정한다.

제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2. 제1항의 별표4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충족 여부
3.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5. 수탁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여부

③ 시·도지사는 공개모집 절차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선정할 수 있다.

별표4와 별표5를 각각 별표5와 별표6으로 하고,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1. 설치 기준

가. 사무실

법 제7조의4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상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칸막이, 방음장치 등)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영 기준

가. 운영 규정의 제정·시행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 서류
- 3) 운영일지
- 4)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5) 예산서 및 결산서
-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장부
- 7)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수신한 문서철
- 9) 피해자상담 등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

다. 회계

-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6(<u>불법촬영물등</u>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제2조의6(<u>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u>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u>여성가족부장관</u> 은 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u>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u> ----- ----- ----- ----- <u>및 신상정보의</u> ----- -----
1. <u>촬영물등</u>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1. <u>촬영물등 및 신상정보</u> ----- -----.
2. <u>촬영물등</u>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2. <u>촬영물 및 신상정보</u> -----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u>촬영물등</u>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	3. ----- ----- <u>촬영물</u> <u>등 및 신상정보</u> -----.
4. 그 밖에 <u>촬영물등</u>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u>여성가족부장관</u>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u>촬영물등 및 신상정보</u> ---- --- <u>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u> <u>사가</u> -----.
② <u>여성가족부장관</u> 은 <u>촬영물등</u> 삭제 지원을 위한 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u>촬영물등</u> 삭	② <u>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u> <u>촬영물등 및 신상정보</u> ----- ----- ----- <u>촬영물등</u>

제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영구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및 신상정보 -----

-----.

- ③ -----

----- 여
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

-----.

1 ~ 3. (현행과 같음)

-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와 -----

-----.

1.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상담
기록: 영구

2. -----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조의2
에 따라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10년

3. (생략)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
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를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
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
3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
려는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 또
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
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생략)

<신설>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및 상담기록 : 10년

3. (현행과 같음)

⑤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

⑥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

⑦ (현행과 같음)

제2조의7(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신 설>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 촬영물 등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 서비스 관련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2.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조의8(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 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2.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 지원 통계

<신 설>

<신 설>

작성 관리

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조의9(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의 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

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7조의4에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2. 제1항의 별표4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충족 여부
3.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5. 수탁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여부

③ 시·도지사는 공개모집 절차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
지 않고 재선정할 수 있다.